#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<u>심 사 보 고 서</u>

2017년 3월 20일 복지건설위워회

#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 2017-7 호

나. 제 안 자 : 강서구청장

다. 제안일자 : 2017년 3월 3일

라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6일

마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

제1차(3월 20일) 회의 심사

### 2. 제안이유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개정으로 급여체계의 급여가 종류별로 별도 규정됨에 따라,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법 제5조가 삭제되었음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제명 "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"를 "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과한 조례"로 개정함.

- 나.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"를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"으로 개정함.(안 제1조)
- 다.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"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"를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"으로 개정함 (안 제2조)
- 라. 조례 용어 "저소득층"을 "저소득주민"으로 개정함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- 마.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4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"를 "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."로 개정함.(안 제6조제1항)
- 바. 기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 등 정비 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, 제7조, 제8조, 제9조제1항, 제9조제2항)

#### 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규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 타

- 입법예고 (2017.1.18 ~ 2017.2.7) : 의견 없음
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(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,
-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.
  - 조례명 중 용어를 "저소득층"에서 "저소득주민"으로 개정하고
  - 안 제1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조문이 상위법상 삭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근거조문을 삭제하였고.
  -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의 정의에 대하여 법 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였으며,
  -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개정사항과 안 제2조 및 제6조를 통해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반영 보완하고, 조례내 일부 용어 및 표현을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가 요구됨.
- 참고로, 본 조례안의 수혜대상인 저소득주민에 대한 2016년도 지원 금액은 1,989세대에 10,477천원이며,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7,000 천원임.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## 관계 법 령

##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- **제4조(급여의 기준 등)**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, 가구 규모, 거주지역,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"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4.12.30.>
  -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<신설 2014.12.30.> [전문개정 2012.2.1.]

#### **제5조** 삭제 <2014.12.30.>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생계급여
- 2. 주거급여
- 3. 의료급여
- 4. 교육급여
- 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- 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- 7. 자활급여
-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-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.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